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일련번호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| 감사자      | 행정○급 ○○○ 등 21명 |             | 공개( )<br>비공개(○) |
| 신분상 조치인원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재정상 조치방법 | -              | 재정상<br>조치금액 | -               |
| 수감부서<br>(처리할 부서) | ○○○○○○○ 등<br>11개 기관 | 처분요구일자   |                | 회신기일        |                 |

# 경 기 도

## 주의 요구

제 목 공공기관 직원채용 사전 미협의

소 관 기 관 ○○○○○○○ 등 11개 기관

조 치 기 관 ○○○○○○○ 등 11개 기관

내 용

### 1. 업무 개요

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6개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.)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방출자·출연법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인사조직 지침」 등에 따라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법령(판단 기준)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」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·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운영과 정원·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·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.

그리고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인사조직 지침(2018. 9. 5.)」 III. 직원의 인사 중 ② 채용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0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

에게 통보하여야한다고 되어 있고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,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.

道 ○○○○○○관(당시 ○○○○관)에서는 2018. 9. 5. 개정된 인사지침을 ‘지방공공기관 인사 운영기준 개정알림(○○○○관-11768, 2018.9.6.)’ 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에 안내하였다.

또한, ○○○○○○관에서는 시행한 ‘道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개선방안알림(○○○○관-1282, 2019.1.21.)’ 에 따르면 기관별 비정규직 채용 관행이 여전하고 동종·유사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동일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공공기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사전(최소 1개월 전) 협의하고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지도·감독부서에 제출하도록 다시 한 번 공문을 시행하였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그런데도 ○○○○○○ 등 11개 공공기관에서는 2018. 9. 5.일부터 현재까지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[표 1] 공공기관 직원채용 사전 미협의 현황과 같이 총 239건에 대해 11개의 기관에서 도(道) 지도·감독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부적정하게 채용을 진행하였다.

[표 1] 공공기관 직원채용 사전 미협의 현황

| 기관명         | 신규 채용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도(道)<br>지도·감독부<br>서 | 비 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            | 전체채용건수       | 채용 사전협의건수    | 채용 사전미협의 건수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| <b>1,774</b> | <b>1,527</b> | <b>239</b>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○○○○○○○○○   | <b>16</b>    | <b>12</b>    | <b>4</b>    | ○○○○○               |     |
|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| <b>54</b>    | <b>53</b>    | <b>1</b>    | ○○○○○               |     |
|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| <b>69</b>    | <b>67</b>    | <b>2</b>    | ○○○○○               |     |
|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| <b>38</b>    | <b>35</b>    | <b>3</b>    | ○○○○○○○             |     |
| ○○○○○○○○○   | <b>91</b>    | <b>85</b>    | <b>6</b>    | ○○○○○○○             |     |
|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| <b>40</b>    | <b>28</b>    | <b>12</b>   | ○○○○○               |     |
| ○○○○○○○     | <b>45</b>    | <b>31</b>    | <b>14</b>   | ○○○○○               |     |
| ○○○○○○○     | <b>31</b>    | <b>24</b>    | <b>2</b>    | ○○○○○               |     |
| 경기주택도시공사    | <b>32</b>    | <b>27</b>    | <b>2</b>    | ○○○○○               |     |
| ○○○○○○○     | <b>1,315</b> | <b>1,123</b> | <b>192</b>  | ○○○○○               |     |

| 기관명     | 신규 채용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도(道)<br>지도·감독부<br>서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        | 전체 채용건수 | 채용 사전협의건수 | 채용 사전미협의 건수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○○○○○○○ | 43      | 42        | 1           | ○○○○○               |     |

그 결과 총 11개 공공기관에서 [별표 1]과 같이 239건에 대해 도(道) 관리부서와 협의 없이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조직 지침」을 위반하였으며,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여부에 대해 채용여부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.

### 관계기관 의견

각 기관에서는 긴급한 채용진행, 결원에 따른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채용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조직 지침」 변경 시 업무 미숙지 등에 의해 도 관리부서 협의 없이 채용을 진행했으며, 추후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# 조치할 사항 각 공공기관 대표들은,

앞으로 「지방 출자출연 인사조직 지침」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채용 시 채용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도(道) 관리부서와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(주의)